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1045호
- 나. 제 출 자 : 권미경의원외 9명
- 다. 제출일자 : 2016년 2월 25일
- 라. 회부일자 : 2016년 2월 26일

2.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일몰 규정 삭제를 통하여 체계적인 노동정책 추진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의 일몰규정 삭제
(안 부칙 제5664호 제2조 삭제)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윤병국)

가. 개정안의 개요

-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는 제정 당시 「서울시 위원회 설치 운영지침」에 따라 “서울특별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의 시행일('14.3.20)로부터 2년(2016년 3월 19일자로 그 시한이 도래 예정)으로 부칙에 명시하고 있음.
- 이같이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년으로 둔 것은 위원회의 남설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운영 이후 지속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조치임.
- 이에 개정안은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의 상설화 필요성에 따라 부칙에 명시된 일몰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체계적인 노동정책 추진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나.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의 운영

- 서울시(이하 “시”)는 근로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일터에서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15.4.29)·시행하고, 서울을 노동존중특별시로 만드는 노력을 하고 있음.

- 서울시 노동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은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을 비전으로 근로자 권익보호와 모범적 사용자 역할 정립의 2대 정책목표와 61개 단위과제로 구성된 ‘서울시 5개년 노동정책기본계획’을 발표했으며, 2015년 519억원의 예산을 포함하여 2019년까지 총 2,852억원의 예산을 마련하고 있음<참고자료2>.

< 서울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정책 비전 및 목표 >



- 또한, 시는 노동교육, 고용안정 강화, 적정임금보장,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노사상호존중, 노동행정조직 보강 등,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노동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이하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
-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는 2014년 3월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이하 “조례”)의 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노동정책 기본계획(안)이 마련된

2015년 2월 이후 설치되었음.1)

〈 서울특별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운영 현황 〉

- 운영근거 :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 구성일 : 2015년 4월 10일
- 임 기 : 2년 ('15.4.10~'17.4.9) ※1회 연임가능
- 기 능
 -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자문
 - 노동정책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자문
 - 근로자의 권리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정책에 대한 자문
 - 그 밖에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발 및 운영에 대한 자문
- 개최실적 : 2015년(1회)

- 그러나 동 조례 제18조2)에 따라 반기별로 정기회를 개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2015년 구성 이후 현재까지 단 한차례만 개최된 것은 시가 노동정책에 대한 플랜과 구호만 있을 뿐 확고한 실천의지가 부족한 단면이라 할 수 있음.
- 이 같이 지방정부 차원에서 '노동행정'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서울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한 만큼, 향후에는 이러한 계획과 그 목적에 맞는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이 요구됨.

1) 노동정책 기본계획 추진 일정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14.3) → 노동정책 기본계획(안)마련('15.2) → 사회적 합의과정 이행('15.3.18) →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심의('15.4.10) → 노동정책 기본계획 발표('15.4.20) → 노동정책 기본계획 시행('15.5~)

2)제18조(회의)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 위원회 존속기한의 폐지(안 부칙 제2조)

-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는 시의회, 시민단체, 노동단체 등 관련자들이 다함께 참여하여 노동계 현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노사정간의 실질적인 협의 기능을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함.
- 또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문제점 및 성과 제고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동정책을 보완·발전시켜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걸맞은 위상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아울러, 표면적인 근로자 보호가 아닌 실질적인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과 서울의 특성을 반영한 노동정책을 실천하고, 노동정책 기본계획의 비전인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을 추진하기 위해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상설화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참고자료 1>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현황('15.4.10)

연번	위 원		현 직	주 요 경 력	비 고
1		권미경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부의장 • 새정치민주연합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2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사 • 고용노동부 청소년 근로환경개선 TF 위원 	
3		김영완	한국경영자총협회 (법제2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인노무사 • 중소기업 고용구조개선사업 심사위원 	
4		김정임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지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여성노동조합 경기지부 지부장 • 안산여성노동자회 고용평등상담실장 • 한국티시전자노조 위원장 	
5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노동) 전문위원 • 한국산업노동학회 학술이사 • 고용노동부 취약근로자 보호대책협의회 위원 	부위원장
6		김종환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중앙회 산업인력팀장 •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장 	
7		박성우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법규국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상담센터 상담원 • 서울지방노동위원(근로자위원) 	
8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공약위원 •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자문위원 	위원장
9		이종수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실행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무법인 화평 대표 노무사 • 영화산업고용복지위원회 운영위원 	
10		이택주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기획조정실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 전국섬유유통노련 교육선전국장 • 한국노총 복지사업본부 이사 	
11		전해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1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동부고용센터장 •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장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서기관 	
12		유연식	일자리노동국장		당연직

<참고자료 2> 서울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백만원)

정책분야	단위과제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총 액		285,232	51,939	57,686	57,405	58,582	59,620
Ⅰ 취약근로자 권익보호		149,733	27,441	29,406	30,185	31,107	31,594
①여성	이동하는 여성근로자 쉼터 운영	250	50	50	50	50	50
	일·가족 양립 지원체계 운영	622	105	110	121	133	153
	맞벌이가정 돌봄서비스 지원	95,763	18,114	18,659	19,219	19,796	19,975
	감정노동자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한 기업·소비문화 만들기 캠페인	190	30	40	40	40	40
②청(소) 년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1,950	390	390	390	390	390
	청소년 노동인권보장 체계 구축	285	30	45	60	75	75
③어르신	어르신 복지시설을 활용한 노동교육·홍보강화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신 어르신 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기능 강화	1,710	332	337	347	347	347
④장애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경영개선	15,306	1,965	3,177	3,288	3,380	3,496
⑤외국인	외국인 근로자 보호	9,158	1,658	1,700	1,800	1,950	2,050
	외국인근로자 의료서비스 지원	10,000	2,000	2,000	2,000	2,000	2,000
⑥중소영 세사업장 근로자	영세사업근로자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	1,664	200	266	333	399	466
	택시운수종사자 처우개선	10,500	2,100	2,100	2,100	2,100	2,100
	신 화물운수종사자 휴게시설 설치	민자	민자	민자	민자	민자	민자
	신 경비종사자 처우개선	230	30	40	45	55	60
	신 도시형 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1,200	240	240	240	240	240
	신 특화산업지구 근로자 노동 상담 및 교육	148	-	37	37	37	37
	신 이동근로자 24시간 쉼터조 성 등 근로여건 개선	686	186	200	100	100	100
	우리동네 음악회	71	11	15	15	15	15

정책분야	단위과제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천원의 행복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㉒ 노동기본권 보장기반 구축		4,602	633	708	1,148	1,006	1,107
⑦ 실태 조사 (모니터링)	신 취약근로자 근로실태 조사 및 분석	250	50	50	50	50	50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근로실태(인식)조사 및 홍보	250	50	50	50	50	50
	직업소개소 지도점검 및 예방활동	95	19	19	19	19	19
⑧ 교육	노동인식 개선 교육 (희망노동아카데미 등)	371	50	60	72	86	103
	시 및 산하기관 공무원 노동인권교육	365	55	70	70	85	85
	신 고용지원사업 취업자 및 기업주 교육	756	136	140	150	155	175
	건설현장 외국인 근로자 대상 찾아가는 안전교육	45	9	9	9	9	9
	신 대학생 노동기본권 교육	96	8	16	24	24	24
⑨ 상담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운영	323	53	60	65	70	75
	신 찾아가는 고용노동 종합컨설팅	50	0	8	10	14	18
	여성노동권 옴부즈만 기능 확대	1,276	88	96	484	284	324
⑩ 홍보	노동인식 개선 홍보	425	75	80	85	90	95
	신 (가칭)서울노동권리장전 제작	300	40	50	60	70	80
	신 노동존중 시민캠페인 실시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㉓ 고용의 질 개선		98,089	17,540	21,093	19,472	19,767	20,217
⑪ 고용 구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6,800	2,728	3,007	1,065	-	-
⑫ 소득	신 생활임금제 도입	24,690	870	5,500	5,500	6,410	6,410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51,300	11,400	9,600	9,800	10,100	10,400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5,971	801	1,150	1,240	1,340	1,440
	『대금e바로』 시스템 운영 확대	1,146	206	235	235	235	235
⑬ 근로 환경	신 노동시간 단축모델 시범 도입	50	-	50	-	-	-
	신 청소근로환경시설 개선	1,558	258	300	300	350	350
	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책	17	2	3	4	4	4
	근로자 권리보호 공공조달 시스템 구축 운영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市 공사장 대상 근로환경개선컨설팅	358	48	70	80	80	80
	市 전체 민간위탁업체 노무진단	100	20	20	20	20	20
	산재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감성안전 추진	660	120	120	130	140	150
	신 민간위탁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1,235	235	265	235	235	265
자치구 환경미화원 처우개선	1,240	240	250	250	250	250	

정책분야	단위과제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다산콜센터 상담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2,208	556	413	413	413	413
	신 공공조달 중소기업장 노무 컨설팅	0	56	100	130	130	130
	4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	32,808	6,325	6,479	6,600	6,702	6,702
⑭ 노사관계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활성화	40	8	8	8	8	8
	서울시 노사정보델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	806	122	156	176	176	176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18,030	3,606	3,606	3,606	3,606	3,606
	신 공정일터 조성 지원	800	100	100	200	200	200
	신 참여형 노사관계 모델 시범 도입	75	75	-	-	-	-
⑮ 지역 사회 협력	노동복지센터 운영	6,600	1,200	1,300	1,300	1,400	1,400
	신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6,411	1,211	1,300	1,300	1,300	1,300
	신 노동정책 민관거버넌스 구축	46	3	9	10	12	12
	신 노동정책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강화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⑯ 행정 기반	신 노동정책 실행력 확보 및 전담조직 강화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신 미래지향적 관점의 노동의제 발굴	별도산정	별도산정	별도산정	별도산정	별도산정	별도산정

※ 시비 : 213,831백만원(75%), 국비 : 37,945백만원(13%), 구비 : 33,456백만원(12%)